

■ 광주 유학생 리더순씨와 함께 광주 시내 돌아보니 ...

중국인도 헷갈리는 중국어 표지판

광주·전남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을 위해 중국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광주시내 중요 시설 표지판마다 중국어 표기가 절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표기 자체도 잘못된 것이 많아 방문객들로부터 성의가 멀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광주시 중국어용 홈페이지는 정보·사항의 제목과 관련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고, 각종 통계 자료도 실제와 차이가 있는 등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19일 중국인 유학생 리더순(李德順·22·호남대 산업경영학과 석사과정)씨와 함께 본보 기자가 광주 지역 표지판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도로 표지판에는 한국어와 영어로만 표기돼 있을 뿐 중국어는 보이지 않았다.

그나마 중국어 표기가 되어 있는 관광지·문화재 안내표지판에는 오기(誤記)가 많았다. 특히 관광객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외국인용 광주시지도와 웹사이트에도 잘못 표기되거나 문법상 오류가 발견돼 지역을 방문하는 중국인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었다.

■ 리더순씨가 본 광주 주요시설 안내문

운천사 마애여래좌상이 마애여좌상으로
운천역 표지판 錦湖地區가 金湖地區로
지하철역 '云泉'과 '舊道廳' 한자 '天' '區'로 표기
시 험피 글은 프로축구단 제목은 '동물원 코끼리 출산'
기후 계시판 광주 기온·강수량 순서도 '뒤죽박죽'



광주시 서구 쌍촌동 상무중학교 앞 도로변에 설치된 안내표지판에는 운천사·磨崖如來坐像(마애여래좌상)이 '磨崖如來坐像(마애여좌상)'으로 표기돼 있었다.

또한 국립5·18민주묘지 내에 비치된 '5·18민중항쟁 사적지 안내도'의 광주시 소개란에도 오자와 문법이 틀린 것이 여러 군데 눈에 띄었다.

광주시 중국어용 홈페이지의 광주소식제시판에는 광주우치동풀원 코끼리 출산 제목에 글은 광주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시민주청약 내용이 들어있는가 하면, 기후 계시판에도 광주의 기온과 강수량 순서가 뒤죽박죽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더욱이 인구와 교육과 관련한 통계 수치도 실제와 달리 올라

있었다.

리더순씨는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광주가 사소한 표기 잘못으로 인해 관광객이나 외지인들로부터 비웃음을 사지 않을까 염려된다"며 "표지판의 표기는 외국인이 가장 먼저 보는 대상이므로 신경써서 점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중국어 전문가가 없고, 중국인 민원이 들어오지 않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확인 후 바로 시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영어가 외국어 표기 원칙이며, 나라마다 모든 언어를 표기할 수는 없다"라며 "표지판보다 광주 관광지도의 구체적인 표기가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7년부터 한국을 방문한 국가별 외국인은 일본·중국·미국 순이며, 중국인 관광객은 2007년 106만8925명(전체 방문객의 16.6%), 2008년 116만7891명(16.9%), 2009년 134만2317명(17.2%), 2010년 5월까지 67만5026명(19.6%)으로 점차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광주 상무중 앞 도로변, 운천사 磨崖如來坐像(마애여래좌상)이 '磨崖如來坐像(마애여좌상)'이라고 표기돼 있다.



도시철도 1호선 운천역 출구, '錦湖地區(금호지구)'가 '金湖地區'로 잘못 돼 있다.

광주지법, 시국선언 전교조 간부 유죄

2명 별금형·2명은 선고 유예 ... 전교조 "즉각 항소"

지난해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직원 50명 중 2명은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숙)는 19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영조(52) 전교조 광주지부장과 김현경(46) 전교조 간부에 대해 각각 1심 판결은 유·무죄가 9대 2로 나뉘게 됐다. 그동안 유죄 판결은 광주지법 목포지원과 인천, 대전 혁신지원, 청주, 제주, 수원, 부산, 대구지법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법 등 8곳에서 이뤄졌으며, 전주와 대전은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원은 가치관 정립이 안된 학생을 교육하는 특수성 때문에라도 정치활동을 더욱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국선언은 공익에 반하는 집단행위"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시국선언이 평화적이었고, 개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님 점,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이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별금형을 선고

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지만, 죄질은 그리 무겁지 않다는 게 법원의 판단인 셈이다.

이에 대해 윤지부장 등은 "법원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윤지부장은 "민주·인권·평화의 도시인 광주에서 시국선언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와 안타깝다"며 "시국선언을 '표현의 자유'가 아닌, '집단행위'로만 본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지부장 등은 지난해 '미디어법'과 '4대강' 등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